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이지연 의원 외 6명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이지연 · 박교상 · 안장환 · 양진오
이선우 · 최경동 · 홍난이(7인)

1. 제안이유

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현행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(안 제9조제3항)

- 당초 : 당연직 6명, 위촉직 13명 이내(청년 5명 이상 포함)
- 변경 : 당연직 4명, 위촉직 15명 이내(청년 7명 이상 포함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,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2. 22. ~ 3. 2.)결과 의견없음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각 국의 국장”을 “일자리, 문화, 복지, 주거 관련 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구미교육지원청, 대학”을 “구미교육지원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청년정책”을 “청년 연령의 공무원이나 청년정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 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 며,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당연직 위원 : <u>각 국의 국장</u> 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<u>5명</u>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. 가. (생 략) 나. <u>구미교육지원청, 대학 등</u> <u>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</u> 다. ~ 마. (생 략) 바. 그 밖에 <u>청년정책</u> 의 추진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	제9조(위원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일자리, 문화,</u> <u>복지, 주거 관련 국장</u> 2. ----- ----- ----- <u>7명</u>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구미교육지원청</u> ----- ----- 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<u>청년 연령의 공무</u> <u>원이나 청년정책</u> ----- -----

관계법령

□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청년기본법」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(안 제1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, 제2호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-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나, 2기 위원회 구성 및 임시회의 개최횟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 정확한 재정의 추계가 어려움.
- 위원회 위원 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
4. 작성자

-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혜영(054-480-2612)